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공포

産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9號중 “위험 및 健康障害의 豫防 措置”를 “安全 및 健康의 保護·增進”으로 한다.

第11條第2項에 第5號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 한다.

5의 2.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評價에 관한 사항

第13條第1項第2號중 “작성”을 “작성 및 그 변경”으로 한다.

第1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6條의2(安全管理者등의 指導·助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管理者가 第13條第1項 各號의 사항중 安全 또는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에게 建議하거나 管理監督者 및 安全擔當者에게 指導·助言하는 경우에는 事業主·管理責任者·管理監督者 및 安全擔當者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産業安全保健委員會) ① 事業主는 第13條第1項 各號의 사항등을 審議 또는 議決하기 위하여 勤勞者·使用者 同數로 구성되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人미만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의 경우에 勞使協議會法에 의한 勞使協議會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勞使協議會가 설치되어

있는 事業場에 있어서는 당해 勞使協議會를 이 法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로 본다.

② 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1. 第13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에 관한 사항

2. 第13條第1項第6號의 規定중 重大災害에 관한 사항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管理者의 數·資格·職務·權限 등에 관한 사항

③ 産業安全保健委員會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事業主 및 勤勞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審議·議決 또는 決定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 또는 決定은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團體協約·就業規則·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程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産業保健醫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에 출석하여 安全·保健에 관한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⑦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할 事業

의 種類 및 規模와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과 議決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第1項중 “審議를”을 “審議·議決을”로 하고 “勤勞者代表의 의견을 들어야”를 “勤勞者代表의 同意를 얻어야”로 한다.

第26條第4項중 “第3項”을 “第4項”으로 하여 이를 第5項으로 하고, 第3項을 第4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事業主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合理的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을 中止하고 待避한 勤勞者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9條第1項 本文중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保健總括責任者를 두어야 할 事業主는”을 “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으로 하고, 同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第29條第4項을 第6項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第1項 또는 第2項”을 “第1項 내지 第4項”으로 하여 同項을 第5項으로 하며, 同條第2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勞動部令이 정하는 産業災害 發生危險이 있는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 그의 受給人 및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와 함께

수시로 作業場에 대한 安全·保健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0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第2號중 “建設工事”를 “사업”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受給者 또는 建設業을 행하는 者는”을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는”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事業主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建設工事を 행하는 事業主가”를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者가”로 한다.

① 建設業, 船舶建造·修理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他人에게 都給하는 者와 이를 自體事業으로 영위하는 者는 都給契約을 체결하거나 自體事業計劃을 樹立할 경우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標準安全管理費를 都給金額 또는 事業費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32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各號의 者는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安全·保健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

1. 管理責任者·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 및 産業保健醫
2. 安全管理代行機關·保健管理代行機關의 從事者
3.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從事者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업의 事業主·管理監督者 및 安全擔當者

第34條의2 내지 第34條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4條의2(機械·器具의 安全認證) ① 勞動部長官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安全·保健基準에 적합한 機械·器具에 대하여 安全證標의 사용을 認證할 수 있다.

② 機械·器具를 製造하는 者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대상·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34條의3(安全證標의 사용) 第34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者는 機械·器具의 包裝·容器 등에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證標를 표시하거나 安全證標 사용의 認證을 받은 사실을 廣告할 수 있다.

第34條의4(安全證標의 사용금지)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證標 사용의 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機械·器具의 包裝·容器등에 第34條의3의 規定에 의한 安全證標 또는 이와 유사한 證標를 표시하거나 安全證標 사용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할 수 없다.

第34條의5(安全證標 사용의 認證取消) 勞動部長官은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安全證標 사용의 認證을 取消하고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安全證標를 표시하여 流通되고 있는 機械·器具가 第3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第34條의6(證標除去등) 勞動部長官은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證標 또는 이와 유사한 認證이 취소된 機械·器具가 流通되고 있는 경우 證標除去를 명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35條第1項 但書を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勞動部長官이 정한 基準 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에 合格한 것

2. 保護具의 部品으로서 産業標準化法 第10條

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표시된 製品

3. 기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外國의 安全認證機關에서 認證을 받은 것

第3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5條의2(防護裝置 製造事業등의 지원)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防護裝置 또는 保護具를 製造하는 者 및 作業環境改善施設을 設計·施工하는 者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者에 대하여는 製造物의 品質 및 設計·施工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내용, 登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36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機械·器具에 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定期的으로 自體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自體檢査에 勤勞者代表를 立會시켜야 한다.

第40條第1項 本文중 “事業主”를 “事業主(輸入을 代行하는 者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輸入을 代行하는 者를 말한다)”로 한다.

第41條第7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내용중 有害化學物質管理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第43條第1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健康診斷에 勤勞者代表를 立會시켜야 한다.

第43條第6項을 第7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 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直接 또는 健康診斷을 실시한 機關으로 하여금 健康診斷結果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同意없이 개별 勤勞者의 健康診斷結果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8條第1項중 “主要構造部分을 變更할 때에는”을 “主要構造部分을 변경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의 의견을 들은 후”로, “計劃書(이하 “有害·危險防止計劃書”라 한다)를”을 “計劃書(이하 “有害·危險防止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로 하고, 同條第3項중 “事業主는”을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의 의견을 들은 후”로,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을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작성하여”로 한다.

第49條 제2항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安全·保健診斷에 勤勞者代表를 立會시켜야 한다.

第5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1條의2(營業停止의 요청등)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産業災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營業停止 기타 制裁를 요청하거나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당해 投資機關이 施行하는 사업의 發注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第23條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수의 勤勞者가 死亡하거나 事業場 隣近地域에 중대한 被害를 주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故가 발생한 때

2. 第51條第6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勤勞者가 業務로 인하여 死亡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措置結果를

勞動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등의 要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2條의4 第1項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教育을 이수하고”를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第6章의2에 第52條의9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2條의9(指導士의 教育) 指導士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務教育을 받아야 한다.

第55條第2項중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을 “財政經濟院長官”으로 한다.

第6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1條의2(名譽産業安全監督官) ①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活動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勤勞者·勤勞者團體·事業主團體 및 産業災害豫防關聯專門團體에 소속된 者중에서 名譽産業安全監督官을 위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譽産業安全監督官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2條(産業災害豫防活動의 촉진) ① 政府는 事業主·事業主團體·勤勞者團體·産業災害豫防關聯專門團體·研究機關 등이 행하는 産業災害豫防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第63條 本文중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者”를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행하는 者,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有

害性調査結果報告書を 檢討하는 者”로 하고, 同條 但書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第63條의2第1項 本文중 “第31條”를 “第31條·第34條의5”로, “物質製造등의 許可”를 “物質製造등의 許可, 安全證標 사용의 認證”으로 한다.

第66條第1項에 第4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項第11號 및 第12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安全證標 사용의 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

11.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12. 第52條의9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教育을 받고자 하는 者

第6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1項, 第26條第1項, 第28條第1項, 第37條, 第38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8條第5項, 第48條第4項 또는 第51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命숨에 위반한 者

第6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7條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3條第1項 내지 第4項, 第34條第2項, 第35條第1項·第3項, 第38條第3項, 第46條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한 機械·器具 및 設備 등을 사용하는 者

3. 第34條第4項, 第38條第4項, 第43條第4項, 第49條의2第3項 또는 第51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命숨에 위반한 者

第68條 내지 第70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6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9條第2項, 第34條第5項, 第43條第1項,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有資格者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者를 제외한다), 第49條의2第1項, 第52條의6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4條의4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證標 사용의 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證標 또는 이와 유사한 證標를 사용하거나 安全證標 사용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한 者

第6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2. 第29條第6項, 第40條第2項, 第42條第3項, 第43條第5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9條第2項 또는 第49條의2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40條第4項, 第41條第4項, 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숨에 위반한 者

4.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의 檢査·點檢 또는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5.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第7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 第13條第1項, 第15條第1項, 第16條第1項, 第16條의 2,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 第19條第1項·第4項, 第21條, 第29條第1項·

第3項·第5項, 第3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3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者를 제외한다), 第35條第2項, 第36條第1項, 第39條, 第44條第2項, 第49條의2第2項, 第50條第3項·第4項 또는 第5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5條第3項, 第16條第3項 또는 第51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3.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作業環境의 測定·評價를 하지 아니하거나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음에도 作業環境測定을 할 때에 勤勞者代表를 立會시키지 아니한 者

第72條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6項중 “第4項”을 “第5項”으로 하여 同項을 第7項으로 하며, 同條第5項중 “第3項”을 “第4項”으로, “第4項”을 “第5項”으로 하여 同項을 第6項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第3項”을 “第4項”으로 하여 同項을 第5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 내지 第3項”으로 하여 同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安全管理費를 計上하지 아니한 者 또는 同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安全管理費를 사용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 第20條第1項 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의 요지, 安全保健管理規程, 物質安全保健資料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者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者代表

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者

2. 第25條, 第43條第2項 또는 第52條의8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32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者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36條第5項 또는 第52條의9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害性調査結果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7. 第4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警告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教育을 실시하지 아니한 者 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讓渡·제공하지 아니한 者

8. 第42條第1項 또는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資格者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작성·제출한 者

10. 第48條第5項 또는 第49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勞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者

11.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答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答변을 한 者

12. 第6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